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를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B3395)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 (주) (02-6910-11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12월 7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16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910-1100/ www.bnkasset.co.kr),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추이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1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채권 95%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다만, ① 내지 ④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우량 채권 중심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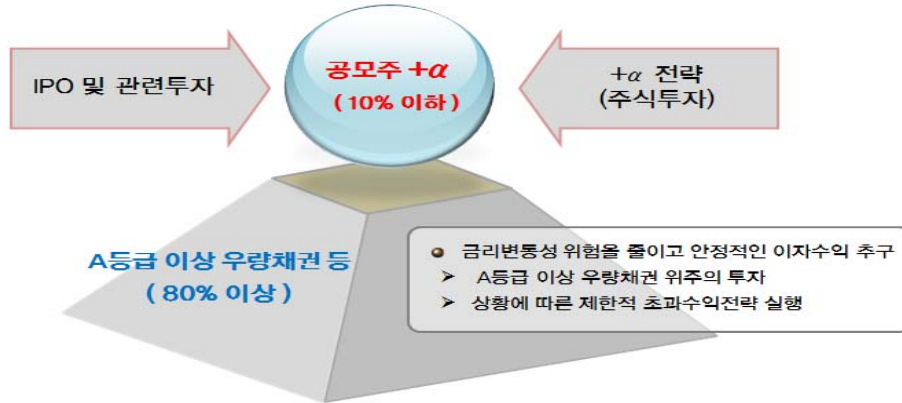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공모주 등 투자를 통해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B120국공채*90% + KOSPI*10%

주1) 비교지수 선정사유 : KOB120국공채지수는 국내 채권펀드가 시장 평균 듀레이션보다 낮은 1년 내외로 운용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잔존만기 3년 이하의 투자 가능한 채권 12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B120 종목 중에서 기타 금융채, 회사채 등을 제외한 국공채형 80종목으로 재구성한 듀레이션 1년 내외의 지수이며, KOSPI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시가격에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시가총액지수로서 국내 주식시장의 종합시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수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비용 및 목표듀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및 위험관리



전략구분		세부전략
채권 운용 전략	듀레이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경기 전망 및 통화정책,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전망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시각의 듀레이션 전략 수립 단기 시장 이슈에 대응한 펀드 듀레이션 조절
	크레딧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선별한 저평가된 우량 크레딧 채권 투자 투자 종목의 유동성 분석을 통해 리스크 관리
	상대가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별/섹터별 상대가치 분석을 통한 다양한 초과 수익원 발굴 위험 대비 수익률 향상 추구
주식 운용 전략	공모주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저한 기업분석으로 투자대상 선정 및 목표주가 수립 모집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주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성 보강
	Post-IP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 후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높은 가격변동성을 활용하여 초과수익 추구 펀드 신탁재산 순자산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꾸준히 수익을 누적해 나가는 전략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장 후 장내 매수 / 2. 상장 후 낙폭 과대종목 매수
	+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주 외에 일반주식에 선별투자를 통한 +α 수익추구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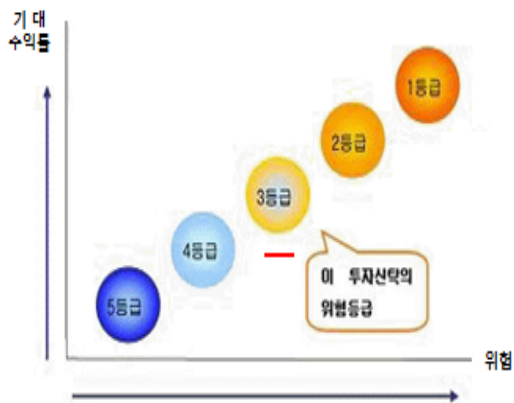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SWAP 등)에의 투자는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에 따라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모주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위험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경우를 1등급으로 하여 가장 낮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5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우량채권 중심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공모주 관련 투자를 통해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채권 및 주식(공모주)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또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의 적정 비율을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 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5.12.07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김길영	1973	책임운용 (채권운용 팀장)	54개	30,211억	- 서울대학교 농공(기계)학과 학사 - LG투자증권 채권트레이딩팀(3년 5개월) - LG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2년) - 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1년 11개월)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2팀(2년 4개월) - 수협은행 자금부(2년 4개월) - BNK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2014.01 ~ 현재)
신은주	1974	책임운용 (주식운용 2팀장)	51개	2,526억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BA - 이지리서치(1년 5개월) - 대우증권 기업·산업분석(3년 1개월) - 한누리투자증권 기업·산업분석(1년 8개월) - 한국투자증권 기업·산업분석(3년 8개월) -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 2팀장(2010.11 ~ 현재)
구경서	1978	부책임 운용 (채권)	50개	4,138억	- 홍익대학교 경영학 학사 - 알리안츠생명 자산운용관리팀(1년 3개월)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4년 1개월) - 대신증권 채권운용팀(2년 9개월) - BNK 자산운용 채권운용 (2014.02 ~ 현재)
김정훈	1985	부책임 운용 (주식)	52개	2,536억	- KAIST 생명과학 학사 -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 (2010.08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채권운용팀 : 김길영운용역 - 3개, 227억 / 구경서운용역 - 3개, 227억
- 주식운용2팀 : 신은주운용역 - 1개, 170억 / 김정훈운용역 - 1개, 170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 및 주식운용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적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	----------------

(Class)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없음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 이내	-	
C	가입제한 없음	-	-	
C-e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C-i	최초 납입금액 50억 이상	-	-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P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관리	기타 비용	총 보수 및 비용	증권거래 비용
지급시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A	0.265	0.40	0.02	0.015	0.001	0.701	0.10
A-e		0.20			0.001	0.501	0.10
C		0.70			0.001	1.001	0.10
C-e		0.35			0.001	0.651	0.10
C-i		0.05			0.001	0.351	0.10
C-P		0.60			0.001	0.901	0.10
C-P2		0.50			0.001	0.801	0.10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5)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운용중인 타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Class A	121	273	438	916
Class A-e	76	185	305	653
Class C	103	320	555	1,230
Class C-e	67	209	364	814
Class C-i	36	113	197	445
Class C-P	92	289	501	1,113
Class C-P2	82	257	446	994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취판매수수료 - Class A : 0.5%, Class A-e : 0.25% 가정)
- 주2) Class A와 Class C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5년이 되는 시점이나, Class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됩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수령시 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와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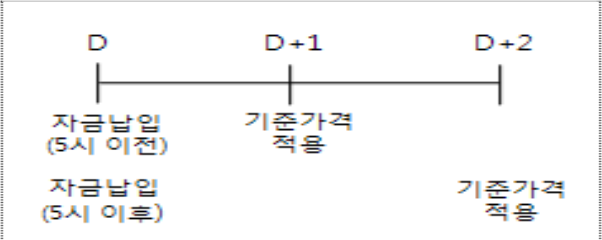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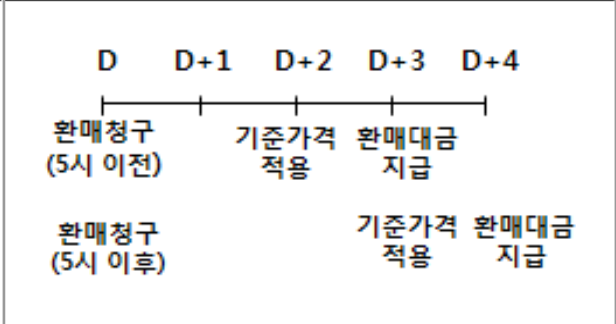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집합투자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매입·환매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II 요약 재무정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